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52 호

2000 년 11 월 4 일 토 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1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2호(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
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3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
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1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0. 11.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1,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동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동조례 제21조 동조례 제22조 동조례 제23조	
허가재무과	1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동조례 제16조 동조례 제17조 동조례 제18조	
환경위생과	1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등록취소신고 또는 업무정지처분	약사법 동법 제16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69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2	의료용구 및 위생품 판매업 등록	동법 제42조	
	3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가. 주민건강의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시행 나. 주민건강의증진에 관한 세부계획등의 보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4	건강생활의 지원 등 가. 건강확인내용 및 절차	동법시행규칙 제3조	
	5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동법 제10조	
	6	보건교육의 실시등 가. 보건교육대상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동법 제12조	
	7	구강건강사업 가. 구강건강 실태조사 나. 불소용액 양치사업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8	국민건강 조사등 가.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나. 영양조사 업무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9	건강증진사업등 가.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 보건문제 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등	동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10	건강증진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동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동조례 제21조 동조례 제22조 동조례 제23조	
허가재무과	1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0 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동조례 제16조 동조례 제17조 동조례 제18조	
세무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고지서출력발급	지방세법 제38조	
청소과	1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지도감독, 법령 또는 명령위반에 대한조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나. 건축관련 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임된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설치(변경)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다.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등의 수리 라. 업무처리실적 보고 및 검사	동법 제19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6조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사무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3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4	보고.검사등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31조	
	5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도 시 정비과	1	공단내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가. 공단내 가로수 식재 보호 나. 공단내 시설녹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취소 처분등	인천광역시가로수관리규정 훈령 제831호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인천광역시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4조,제20조	
건축과	1	연면적 1,650㎡이하인 일반건축허가 및 신고,가설 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허가 및 신고(대수선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및 설계변경포함)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제14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나. 착공신고,중간검사 및 건축물의 사용 검사 다.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바. 보고 및 검사 사.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의 특례 아. 과태료 및 강제이행 금의 부과,징수등의 조치 자. 건축물대장관리 및 등본발급	건축법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8조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제27조 건축법 제69조 및 동법제 제75조 건축법 제76조 건축법 제74조 건축법 제82조 및 동법 제83조 건축법 제29조	
지 역 경제과	1	공단중소기업육성종합 계획수립	중소기업육성진흥법제3조	
건설과	1	가. 도로환경정비 나. 콘크리트및보도유지 관리	도로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동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동조례 제21조 동조례 제22조 동조례 제23조	
허가 재무과	1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권한(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동조례 제16조 동조례 제17조 동조례 제18조	
세무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고지서출력발급	지방세법 제38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사 회 복지과	1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2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3	매화장 및 개장신고	매장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청소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 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0. 11.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2호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선발) 제1항중 “아래구비서류를”을 “재학증명서 1통”로 하고, 동항의 1,2,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자”로 한다.

제6조(선발) 제1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

2000년(하·동계)부업대학생 신청서

* 신 청 인	성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명	漢	文		연 락 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 : H.P :		
	새	대	주		새 대 주		
	성	명			와의관계		
	학	교		명	학부 또는 학과		
남	동	구	부업	경력	년(하계·동계)	근무부서 (실.과.소.동)	

상기와 같이 부업대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장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재학증명서 1통(모집공고일 현재) 2.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00년 (하·동절기) 부업대학생신청 접수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학년			접수번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0. 11.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3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건설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 조명중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하고,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제4조제7항중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제2항 단서 조항에 의거 배출할때는 폐기물을 최종 운반 장소 까지 적정(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의 운반행위 금지)하게 운반하고, 타인 소유 차량으로 운반할 때도 배출자가 최종 확인 하여야 하며,불법 처리시 행위자 처벌외에 배출자가 당해 불법처리 폐기 물에 대한 부적정 처리 책임을 진다.

④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동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배출자(위탁자)와 처리자(수탁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1조 제4항 관련 “(별표5-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 지】

폐기물봉투의 사양(제11조제4항 관련)

☐ 가정사업제용 쓰레기봉투(125ℓ)

30cm	○ ○ ○	결취선 —	☐ 구도시 ☐ 봉투형 <input type="diamond"/> 용량
	무 는 부 분		
90cm	< 남동구 마크 > 공사장 생활쓰레기 봉투 (125ℓ) 1. 이 봉투는 배출시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등을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대상쓰레기 (건설폐자재 중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등 불연성쓰레기) 신고대상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은 제외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 거부를 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처 리 대 행 업 체 : ○ ○ ○ (전화 :) 불원사항신고처 : 남동구 청소과 (전화 : 453-2390) 제작업체, 사업자번호, 품질인증번호		
	80cm		

- 주의
1. 봉투의 인쇄문안 크기는 전체규격에 80%이상으로 한다.
 2. 디색 바탕에 청색 글씨
 3. 처리업체에서 결취부분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매월 구에 제출
처리업체에서 결취후 매월 구로 송부(결취선 가로×세로, 5×3cm)